

의안번호	제 64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3월 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 646

제출연월일 : 2021년 3월 3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법령상 근거 없는 “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” 자구 삭제

### 2. 주요내용

- 제24조(실적보고)제4항  
-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삭제

#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실적보고) ①~③ (생략)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<u>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</u>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	제24조(실적보고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<u>보조금을</u> 감액할 수 있다.

#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4항 중 “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”를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근거 발췌

### □ 지방재정법

제32조의6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37조의3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)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□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

제24조(실적보고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